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 2006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원　고 : 여　운　택 외 139

피　고 :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고지인)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지인 **대한민국**에게 별지 소송고지서와 같이 소송을 고지할 것을 신청합니다.

1. 피고지자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성호

첨　부　서　류

1. 소송고지서　　3부

2007. 01. .

위 원고(고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소 송 고 지 서

사　　건 : 2006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고지인(원고) : 여　운　택 외 139

피　　고 : 주식회사 포스코

피고지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성호

위 고지인(원고)는 피고지인에 대하여 고지인(원고)과 피고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2288호 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을 고지합니다.

고 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고지인,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군인, 군속 혹은 노무자로 동원된 희생자및 그 유족이며 일본 및 일본 기업에 대한 미수금,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채권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로써 피고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들어온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인 탓에 피고에 대하여 청구권자금에 기한 원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 피고지인과 이 사건과의 이해관계

2005. 8. 26. 한일수교회담문서가 전면 공개됨에 따라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생존자 1인당 200불로 계산하여 도합 364,000,000불의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 왔음이 들어 나기에 이르러 피고지인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유용한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지인에게 피고가 사용한 금원을 모두 반환 하였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지인이 청구권 자금의 귀속 상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건 판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고지인은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에 의해 이 건 소송고지에 이른 것입니다.

소 송 의 정 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2288호 위자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아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차회 변론기일은 서면공방 후 진행으로 인해 추후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첨 부 서 류

1. 소장사본 1통

1. 답변서 1통

1. 준비서면(06-7-13) 1통

2007. 2 . .

위 고지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준 비 서 면

사 건 : 2006 가합 42288호 위자료 청구

원 고 : 여운택 외 139

피 고 : ㈜ 포스코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의 경우에는 각종의 전형계약 및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통한 조정과 유형화가 기대될 수 없기에 이러한 작업은 판례나 학설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므로 판례의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법성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권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리 침해 외에 보호 법규 위반과 선량한 풍속 위반을 들고 있고 일본 민법의 경우에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권리 침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위법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개념은 고정적으로 되기 쉬움에 비하여 위법성의 내용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독일 민법의 경우와 같이 권리 침해 이외에도 법적 이익의 침해나 선량한 풍속위반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법규에 직접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배려 및 협조를 거부하고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과 유착을 강화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는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며 청구권 자금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현재까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배려 및 협조의 거부의 위법성에 대하여,

(1) 우리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과 아울러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5조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고려하면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위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방조, 조장하는 것도 우리 헌법 및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우리 헌법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상으로도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 및 협조상의 주의 의무는 주의 의무 이행의 필요성, 주의 의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그 효과 등을 비교 형량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그 범위 역시 법원의 판례에 의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될 만한 것이 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및 협조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과거 일제 피해자들로부터 전범기업을 상대로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실히 그 협조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① 일제 피해자들을 적극 방문하여 그 요청사항을 접수하였고, ② 이어 책임기업의 담당자를 호출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성실하게 전달하였고, ③ 일본의 본사에 임원단을 보내어 피해자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요청하였고, ④ 일본 기업이 피해자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향후 비즈니스는 어려울 것이라 통보하였고, ⑤ 실제 전범기업과의 거래중단요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여 중단하였으며, ⑥ 더 나아가 향후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협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⑦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회신하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배려하고 설명하였으며 정보 제공은 물론 보고 및 협력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헌법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으로서 헌법상은 물론 조리상으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요구하고 이행함으로 인해 우리 헌법이 규범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3) 특히 피고 회사의 경우와 같이 원고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한 기업으로서는 청구권 자금과 무관한 회사와 달리 일제 피해자에 대해 더 높은 정도의 배려 및 협력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봄이 조리상 인정이 됩니다. 이는 우리 민법의 근본 이념인 신의칙에 비추어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로 도 수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되어 피해자를 배려할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기업은 특히 일제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법과 상식에 따라 제대로 해결되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의문점에 대해 성실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필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할 의무는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점에서 본다면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성실히 접수한 바도 없으며 제대로 설명의무를 다한 바도 없고,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담당자를 불러 피해자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은 더 더욱 없습니다. 심지어 보상은커녕 아직도 강제동원희생자로서 유골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의 유골에 대해서 한마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측에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문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밝힌 바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의 전범 회사들 조차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혀 오는 것에 비교하여 보면 피고는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술 제휴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업으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제휴 기업을 선택하고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나 왜 하필이면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전범기업과 제휴를 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 원고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다 한 바도 없고, 제휴의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배려하여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휴의 중단은커녕 주식의 상호 보유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3.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위 '하와이구상'을 통해 청구권 자금을 피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전용하여 최근에 공개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문서의 공개 및 귀원의 사실조회 결과 회신에 따라 입증이 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위 자금의 귀속을 결과적으로 방해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재산권 침해는 아직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피고는 청구권 자금을 소외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회수하여 갔다고 주장을 하며 그 책임을 부정하나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현재 위 주장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의 사유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007. 3.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Ref. NO. 001-07-015111

준 비 서 면

사 건 **2006 가합 42288** 위자료 등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소위 청구권자금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의 부당성

원고들은 2006. 9. 20.자 준비서면 1~2쪽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태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 설립에 즈음하여 부족한 외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여 소외 하와이 구상 청구권자금 유용에 대하여 적극적 제안을 하고 그 결과 사용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가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그러나, 청구권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청구권자금은 무상자금 · 차관자금 · 원화자금으로 나뉘고(**제2조 제1-3항**), 이러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합니다)를 두며(**제7조**), 위원회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할 대상사업 및 그 사업계획,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 및 도입절차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청구권자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제9조 제1항**), 경제기획원장관은 청구권자금의 연도별 사용에 관한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대통령의 심의를 얻어야 하며(**제13조 제1항**), 나아가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제13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구권자금은 박태준이 원한다고 하여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의 계획안 작성과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동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용내역이 결정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국회는 수차에 걸쳐 청구권자금의 실시계획을 심의하여 동의해 주었던 것입니다{**을 제3호증의 1 제75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을 제3호증의 2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71)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을 제3호증의 3 청구권자금 제9차년도 및 제10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각 참조}.

따라서, 마치 박태준이 주도적으로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개입한 것처럼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설령 박태준이 그런 제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리 만무하고, 또 그 후 설립된 피고가 청구권자금에 기한 국가의 출자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까닭은 더욱 없습니다. 원고들이 청구권자금에 관하여 무

YULCHON 律村 YULCHON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슨 권리가 있다면, 국가가 그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원고들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국가의 출자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청구권자금에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국가의 청구권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 주장 – 청구권자금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가사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돌아갈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가 한일청구권자금을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이 1975.경이고(을 제3호증의 3 청구권자금 제9차년도 및 제10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참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766조 제2항 참조), 이 사안에서 가사 피고의 청구권자금 사용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돌아갈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3.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의견

원고들은 현재 소외 박태준, 김종필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소외 박태준, 김종필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은 모두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에 관한 것이고, 게다가 그 내용 중 대부분은 공지의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돌아갈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가사 원고의 주장 모두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증행위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외 박태준, 김종필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사건의 결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불필요하기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증인신청을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3호증의 1 제75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2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71)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3 청구권자금 제9차년도 및 제10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2007. 6.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 섭

담당변호사 장 영 기

담당변호사 오 정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4부 귀중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 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참 고 서 면

사 건 : 2006 가합 42288호 위자료 등

원 고 : 여 운 택 외 139

피 고 :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은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을 원용함과 아울러 최근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배려 및 협력 의무 위반의 점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최근인 2007. 4. 27.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인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소멸 시효의 원용을 주장하는 니시마츠건설측의 주장을 권리 남용이며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결론적으로 전쟁 배상을 포기한 중국 정부의 중일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공동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 피해자 개인이 가지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상 소구할 권능을 잃게 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면서 남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피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피고 니시마츠건설측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사법부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일본의 책임 기업 등에 대한 재판 외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이를 위해 특히 책임 기업의 주주들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은 더욱 명백해 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 이후 선고된 2007.5.31. 나고야고등재판소의 근로정신대피해사건에서도 전범기업인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관련되어 한일청구권협정 제 2조 제1항과 제3항을 원용하자 위 고등재판소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며 단지 재판상 피고에게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갑 제 22호증의 1,2). 결국 일본의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해석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영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즉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논리를 적용하면 소외 신일본제철주식회사는 강제동원 책임기업으로서 한국의 일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은 넉넉히 추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는 일제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법익 침해 상태를 방조, 조장하지 않게 하여야 할 우리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잘못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강제동원을 당하여 희생을 당하고도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골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조사하고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의무는 우리 헌법 규범에 따라 판단할 것도 없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이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원고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한 기업으로서 이 정도의 배려 및 협력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같은 책임 기업들에게 촉구한 피해자들의 구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제를 위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헌법 및 법적 조리적 의무의 이행과 별도로 현실적으로 보아도 본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이 되어야 바람직한 피해자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재산권이 냉전시 한일간 정부에 의해 침해가 되었다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2002 구합 33943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의 용기있는 판결에 의해 공개된 문서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 지게 되었고, 이러한 판결의 영향으로 한국 정부는 최근에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을 만들고 있으나 보상도 아닌 지원법으로 법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고 위 부족한 지원법마저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권이 운위되는 딱한 사정입니다.

원래 일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져야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민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리 정부가 지원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인인 피고로서의 책임은 정부의 지원법 움직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궁이 되어야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4.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본건 위자료 청구는 인용이 되어 일제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돌려 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 7.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007. 08. 24
www.scourt.go.kr

나.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42288 위자료등

2007가합40135(병합) 위자료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여운택 등 15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이춘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괴동 1

송달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 서울지점

대표이사 이구택, 윤석만, 정준양, 이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변 론 종 결 2007. 7. 9.

판 결 선 고 2007. 8. 17.

www.scourt.go.kr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2006가합42288 사건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4, 6, 7,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신천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일본의 강제동원

1)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일본제철'이라고 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등의 일본 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근로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면접, 일본어 회화 능력, 가족구성, 사상내용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모집심사에 합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체행동 훈련을 받은 후 일본제철의 오사카 제철소 등으로 가서 훈련공으로서 노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2) 훈련공들은 오사카 제철소에서 1근무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하였는데, 한 달에

1, 2회 정도의 휴일이 허용되었고, 한 달에 2, 3엔 정도의 돈만 지급받았을 뿐, 일본제철은 훈련공들이 독신자이기 때문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여 주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단으로 개설한 공원 명의의 우편저금 구좌에 훈련공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그 저금통장과 신고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훈련공들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노역에 종사하였으나, 훈련공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그 양이 매우 적었다.

3) 그러던 중 일본은 1945. 초경 위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였고 훈련공들은 징용 이후에는 한 달에 2, 3엔 정도 지급받던 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오사카 제철소의 공장은 1945. 3. 19. 미합중국 군대의 대공습에 의해 파괴되었고, 훈련공들 중 일부는 위 공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 6.경 청진에 건설 예정인 제철소로 배치되어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훈련공들은 기숙사의 사감에게 자신들의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신고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통장 및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일본제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4) 원고들은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피해 진상규명 및 권익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의 회원들이다.

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정

1) 1951. 10. 21. 예비회담을 거쳐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었다.

2)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청구권자금'이라고 한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

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 .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 한국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피고의 설립

1) 대한민국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4조에서 "무상자금은 농업·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제1항). 차관자금은 중소기업·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제1항)."라고 규정한 다음,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신고기간, 증거조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금액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각 법률의 규정상 피징용 사망자와 재산권을 보상대상으로 할 뿐 피징용 부상자, 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등은 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고기간도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60일 경과 후부터 10월 이내로 한정되었으며, 보상금은 피징용 사망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는 일본국 통화 1엔당 30원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 대하여 약 25억 7천만원, 예금·채권 등 재산 74,967건에 대하여 약 66억 2천만원, 합계 약 91억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후 1990.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피고(변경전상호 :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는 1968. 4. 1. 설립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규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 중 1억 1,95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피고의 설립에 사용된 무상 청구권자금 중 3,08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고, 유상 청구권자금 중 8,870만 달러는 차관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피

고가 이를 직접 상환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 동원된 훈련공 또는 그들의 유족으로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받았으면 원고들과 같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①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이라고 한다)와 기술제휴를 하고 주식을 교차 보유하는 등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위 ①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청구권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되었고, 그 후 피고의 설립에 사용된 무상 청구권자금 중 3,08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으며, 피고는 차관으로 도입된 유상 청구권자금 중 8,870만 달러를 직접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자금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자금사용기준'

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법률 규정 및 청구권협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권자금은 그 전액이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신일본제철은 1998. 11.경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설비공급·조업·건설·엔지니어링 부문 등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다음, 신일본제철은 1998. 12. 피고 주식 전체의 0.1%를 5,885,000달러에 매입하고, 피고는 1999. 6. 신일본제철의 주식 601,000주를 1,410,000달러에 매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0. 8. 2. 신일본제철과 사이에 앞으로의 기술개발, 제3국에서의 사업, 정보통신기술,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아울러 상호 지분보유 한도를 당시까지 피고의 동일인 지분보유 한도인 3%까지 늘리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은 사실, 원고들은 2000. 8.경부터 피고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과거 침략의 역사 청산과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들은 2001. 3. 16. 피고 본점 앞에서 '제휴에 앞서 과거청산이 우선이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고, 2006. 6.경에도 피고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구성요소인 위법한 행위는 실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평화와 기타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제휴 등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과거 침략의 역사 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들어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_____

www.scourt.go.kr

판사 백숙종 _____

판사 이혜성 _____

준 비 서 면

사 건 : 2007 나 87872 위자료등

2007 나 87889 (병합)

원고(항 소 인) : 여 운 택 외 150명

피고(피항소인) : ㈜ 포스코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들어 가면서,

구체적 항소 이유의 개진에 앞서 현재 원고들과 같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 권리 구제의 최근 현황과 본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진술하겠습니다.

가. 원고들과 같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현황

원심에서 상세히 논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현재까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채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최근 재판 투쟁의 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5. 6. 22.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기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가 맺은 조약과 협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지, 소멸이 된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러하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이 되었는지 의문이 여전하나 적어도 일본에서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의 길은 2007.4.27.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원칙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이와 같이 일본에서 재판을 통한 원고들의 권리 구제에 결정적 장애물을 만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의해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공개된 이후 비로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히고, 그에 따라 추가 조치로 피해자 지원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에 대해 피해자들과 다른 해석을 하여 법률의 제정이 진퇴 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즉 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구권 자금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생존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우여 곡절 끝에 국회에서 결국 생존자 1인당 금 500만원의 위로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가되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앞서 본 이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유에 더하여 추가 예산(을제4호증의 2에 의하면 금 820억원)이 든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률안이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구권 자금의 귀속 주체에 대한 귀 원의 판단에 의해 법치주의에 맞게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본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

본 소송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기업의 법적 책임이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어떤 것인지가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판단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인하여 도입된 청구권 자금이 청구권을 가진 주체인 일제 피해자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당시 시급했던 경제개발에 사용되어 우리 경제가 발전이 되었다고 흔히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런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되어 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 연간 수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청구권 자금의 귀속 주체여야 할 원고들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원고들로부터 강제 동원 책임기업이면서 현재까지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소위 전범기업으로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유착을 강화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결국 본건 피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본건에서 쟁점이 되었고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반드시 법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①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 특히 생존자인 경우 귀속 주체가 되지 못하는지

②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며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행위가 피해자들의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인지

③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국가기관 및 국민 개개인은 존중하고 배려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기업은 어떠한지

④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그 책임을 부정하고 침략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법익 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반헌법적 전범기업과 제휴하고 유착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어느 범위에서 허용이 되는지

⑤ 반헌법적 전범 기업의 주주로서 어떤 규범적 책임을 지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은 최초의 소송이므로 충분히 심리되고 선례로서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피고로서는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위 쟁점에 대해 충분한 판단이 없어 본건 소송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를 설립하는데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여 청구권 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한 부분 ② 일본제철주식회사를 승계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를 하고 주식을 교차 보유하는 등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쟁점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없고 특히 원심의 변론 종결 전인 2007. 4. 27. 선고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부각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법적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 ② 부분의 판단 부분도 일제 침략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행위가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권리로 보호되는지 여부 및 일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법적 의무가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있는지 여부, 특히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기업으로서 그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판단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피고가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방조 조장하여도 우리 헌법상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1항 ④에서 언급이 되었듯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그 책임을 부정하여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조장하고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있는 반헌법적 전범기업과 제휴하고 유착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어느 범위에서 허용이 되는지 에 대해 우리 헌법 질서상 납득이 가는 범위를 선례로서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① 부분의 판단도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에 대해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판단이 없고, 원고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한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막은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부당합니다.

3. 원심 판시 2. 나. 판단 2) 항에 대한 불복 부분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행위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이며 그 권리 행사에 대해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있고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는 더욱 위법적 의무를 져야 합니다.

가. 헌법 전문 및 관련 조항의 규범적 효력에 대해

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권력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전문에 나타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난 헌법 이념은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헌법 제5조에 의하면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헌법 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근본적 결단 내지 합의 결과인 헌법 이념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비롯한 국민 개개인은 이를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위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행위이며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피해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할 경우에는 피고를 비롯한 국민 개개인은 이를 존중하고 배려 및 협조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에 기인하여 인정이 됩니다.

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의 내용에 대한 판단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원심은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구성 요소인 위법한 행위는 실정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평화와 기타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당히 판시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위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는 그 질서의 근간이 되는 행위이며 권리이자 피해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할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방조, 조장하는 것은 당연히 반사회적 질서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반사회적 질서로 보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① 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방조, 조장하지 않기 위해 다한 배려 및 협조 의무 이행과 비교

원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우리 헌법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상으로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 및 협조상의 주의 의무는 주의 의무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이행의 필요성, 주의 의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그 효과 등을 비교 형량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그 범위 역시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확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삼성전자주식회사와의 비교에 따른 내용의 구체화와 이에 대한 규범 평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② 피고의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책임

현재 피고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지분을 2.2% 가진 주주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법률상 주인으로서 주주 총회 등을 통해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임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07. 4. 27. 선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본 책임 기업들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노력이 촉구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법률상 주인인 주주들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는 일제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 총회에서 발언하고,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법익 침해 상태를 방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조, 조장하지 않게 하여야 할 우리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위법성이 있음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방치상황, 2007. 4. 27.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미불금 상황 등을 들어 상세히 주장하였음에도 이 부분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③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정신적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 부분

원심은 피고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를 하고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만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같은 전쟁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피고에게 어떤 요구를 어떤 근거에서 하게 되었고, 이를 무시당한 것이 어떤 상황적 이유에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참고로 원심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의 제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그 규범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사회 상규상 요구되는 충분한 배려를 하고도 부득이하게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제휴를 한 경우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원고들의 요구를 무시하여 모욕에 가까운 명예 감정을 침해 받는 인격권 침해를 초래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한 경우와는 그 위법성이 현저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배려하여 강제 동원 책임 기업인 후지코시사와 제휴 관계를 중단한 것과 비교하여도 그 배신성은 입증이 됩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회사의 윤리 규범을 통하여 "기업 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인권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등은 준수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아울러 윤리 규범의 행동 준칙으로서 고객과의 거래에도 탈세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제한한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소한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의 거래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강제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금하는 국제 법규를 위반하였고 현재까지 그 책임을 부정하며 침략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법익 침해를 조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범 기업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는 회사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휴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원심은 아무런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규범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재판지원회의 일본인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재판지원회 회원들 앞에서 무시당하여 당한 정신적 고통, 일본의 재판 결과의 부당성과 그 해결을 위한 피고 방문의 필요성 및 피고의 배려 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 아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무런 사실 인정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가해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잘못이 원심에는 있습니다.

4. 원심 판시 2. 나. 판단 1)항에 대한 불복 부분 : 청구권 자금의 귀속 방해 부분

원심은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그 전제로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에 대해 우선하여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권 자금은 그 전액이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고 하여 청구권 자금의 일정 부분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는 강제 동원 생존자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상금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 하나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성격이라면 원고들에게 귀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가 사용한 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할 금원이며 원고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귀속 방해로 인한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적어도 무상 자금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수교회담문서 공개등 대책 기획단' 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강제 동원 피해 부분이 무상 자금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 결국 원고들에 대한 변제 내지 대물변제의 성격의 자금임을 밝히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법률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금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무상 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만 규정하여 무상 자금의 피해자에 대한 귀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조항의 위헌성이 다투어져야 함에도 만연히 법률 규정에 따른 것임을 들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유탈이 있습니다.

5. 결론에 갈음하여,

가. 피고는 피고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듯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피의 대가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상황과 관련하여 2006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영업 이익 1조원을 달성했고, 올해 연간 목표인 영업 이익 4조 5천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창사 이래 도덕성을 핵심 가치로 지켜 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미 1993년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3. 6. 2.에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한 윤리 규범을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제정, 선포하여 실천을 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 규범 05.를 보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기업 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인권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등은 준수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아울러 윤리 규범의 행동 준칙으로서 고객과의 거래에도 탈세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제한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 윤리에 위반하는 의사 결정이라면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업 윤리가 회사 이익보다 우선 한한다는 신념을 실천하여 권위 있는 기관과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모범적인 윤리 경영 모델로 평가 받고, 공직 사회와 국내 경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는 등 존경 받는 기업으로서 자부심을 내 세우고 있으나 피고 설립으로 인한 직접적 희생자인 일제 피해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책임 이행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습니다.

나. 원심은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 징용,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결과적으로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행위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이며 그 권리 행사에 대해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있고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는 더욱 위법적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아무런 성과가 없고 오히려 책임 기업인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법적 책임마저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의 재판부조차 면책시켜 법적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완전 봉쇄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적어도 청구 취지와 같은 소액의 위자료나마 인정이 되어 법적 정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원심의 잘못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 10.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고등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상대방용

Ref. NO. 001

준 비 서 면

사 건 **2007 나 87872, 87889(병합)** 위자료 등

원 고 **여 운 택 외 150명**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들어가며

원고들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①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②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삼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2. 청구권자금의 귀속을 방해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권자금이 피고에 출자된 경위와 내역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청구권자금은 무상자금 · 차관자금 · 원화자금으로 나뉘고(**제2조 제1-3항**), 이러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합니다)를 두며(**제7조**), 위원회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할 대상사업 및 그 사업계획,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 및 도입절차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청구권자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제9조 제1항**), 경제기획원장관은 청구권자금의 연도별 사용에 관한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대통령의 심의를 얻어야 하며(**제13조 제1항**), 나아가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제13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구권자금은 피고측 관계자들이 원한다고 하여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의 계획안 작성과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동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용내역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일청구권 자금 총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중 1억 1,950만 달러가 포스코에 투입되었는데, 그 중 무상자금 3,080만 달러는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고, 유상자금 8,870만 달러는 차관형식으로 도입되어 피고가 직접 상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2000. 10. 4. 완전 민영화 되기까지 정부가 피고에 출자한 자금은 무상 청구권자금 12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05억 원이고, 반면에 민영화 완료 이전까지 정부가 주주로서 현금배당 및 주식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금액은 총 3조 8,899억 원인데, 이를 민영화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현가를 환산해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보면 정부의 출자금은 4조 825억 원이고 정부가 이익을 실현한 금액은 6조 908억 원으로 정부가 회수한 금액이 출자금의 1.5배에 이르게 됩니다.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

(1) 청구권자금의 성격과 운영방법의 적법성

우선, 피고의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자금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자금사용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법률 규정 및 청구권협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권자금은 그 전액이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의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될 청구권자금의 귀속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최초 공모의 현실적 불가능성

원고는 피고가 정부와 공모하여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정부가 한일청구권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최초 투자 당시에는 아직 피고가 설립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피고가 정부와 공모한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피고는 한일청구권 자금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리고,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1965. 6. 22. 자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문서들은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시초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가 되어 공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문서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에 따른 청구권자금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사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자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해 주지 않고 피고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부당성

피고의 민영화 과정 및 신일본제철과 제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에 나서게 된 것은 결코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주주비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화한 피고는 더욱 치열해지는 생존경쟁 속에서 단지 생존을 위하여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된 것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는 실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평화와 기타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사이에서 제휴 등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결코 원고들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 섭

담당변호사 이 상 민

담당변호사 장 영 기

담당변호사 오 정 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9부 귀중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준 비 서 면

사　　건 : 2007 나 87872호, 87889호(병합) 위자료등

원　고 (항소인) : 여운택 외 150명

피　고(피항소인) : ㈜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항소심에서 기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본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국내 기업의 법적 책임이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어떤 것인지가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판단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이미 제출된 준비서면에 주장된 법적 쟁점과 관련된 항소이유에 대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명백히 설시 되어 청구권 자금과 관련되어 한일 양국에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도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움직임이 승화되어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지체되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고 있는 정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닌가가 달려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점에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준비서면 제출 후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론 준비합니다.

2. 최근원고와 같은 일제 피해자들 권리구제 상황

가. 한국 상황

포스코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진술하겠습니다.

(1) 법률의 제정과 실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지원법 이라 함)이 국회에서 2007.12.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그 이전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이 너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고 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에 추가하여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에게 만이라도 금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자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의하여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여 곡절 끝에 결국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최종 재의 확정 통과 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 2008.9.1.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위로

금 등의 신청을 받고 있고 극히 최근인 2008.10.30. 국무총리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위로금에 대해 최초로 지급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이번이 처음"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공개하라는 우리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기인한 것입니다.

(2) 피해자지원법의 실시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하지만 현재 실시중인 위 피해자지원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명이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권리를 인정한 다음 그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공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일본측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책임을 우리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일방,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도 법적 책임이 있는 일본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법적 견해발표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아니라 은혜적 차원의 지원이다 보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국외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생환하였으나 현재 사망한 자를 위로금 대상에서 역시 배제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역시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단지 의료보조비로 월 7만원이 되지 않는 돈을 지급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들 사이에는 강제동원 되었다가 살아 나온 것이 죄인가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금 2,000만원 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해방 전 국외 강제동원 사망자의 경우에도 실제 총각으로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경우가 많은데 그 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사망자의 조카를 제외하는 등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그나마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는 위 돈이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므로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 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의 액도 보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소액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로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법 제1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동의서에는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여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위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된다며 원고들에 의해 현재 헌법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문서를 전면 공개를 하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일본 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있음에도 그 분쟁조차 해결하려 하지 않아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역시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소 결

이와 같이 해방이 된 후 60여년이 넘었고, 한일청구권협정이 맺어진 지 4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냉전에 편승하여 당시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의 태도에 근본적인 제 1차 책임이 있고, 1965년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였어야 할 우리 정부의 잘못이 경합하여, 현재도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현재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과정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분단으로 인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일본측 태도로 인해 현재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면 공개로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만 비로소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들의 최종적인 책임 이행을 견인하여 한일간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일본의 상황

(1) 한일청구권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

현재 일본에서도 1965년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과거 일제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잘못이 지금이라도 가해국의 내부에서 스스로 시정되어 그에 따라 법적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본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정의를 회복하여 주는 계기가 되었던 한일청구권협정문서 공개가 일본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결국 일본에서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2007.12.26.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부

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 공개된 문서 역시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 내용을 알 수 없게 삭제된 부분이 많아 그 완전 공개를 요구하며 현재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추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취지에 따른 포괄적 화해 실현 노력

아울러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07.4.27. 니시마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언급된 바, 즉 국가간의 전쟁배상 포기는 개인의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판상 소권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자발적 책임 이행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일본 사법부에서 판단된 바 있으므로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취지가 실제 실현되게 하자는 움직임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일본 동경의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본사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금요시위가 1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007.11.1.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원고에 대해 1인당 일본돈 각 100만엔씩 일본 정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나머지 한국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현재 추진 중 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 침해를 한일간에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결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귀 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재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3) 소 결

1심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양국정부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문서를 양국 정부가 전면공개하고 그 공개에 즈음하여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 문제가 정부간에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명백히 한 후에 규명된 책임에 따라 책임이 있는측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당시 문서가 전면 공개되어 그 공개에 즈음하여 법적 견해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부족하나마 피해자지원법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실제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피고와 같은 기업들은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이행을 전혀 견인하고 있지 못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

가. 피고에 대한 헌법적 규범의무의 확인과 그 이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1) 피고는 스스로 회사 홈페이지나 기업 설립 당시 책임자들의 거듭되는 증언에서 명백하듯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설립되고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할 규범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과 아울러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5조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고려하면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임시 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위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우리 헌법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상으로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 및 협조상의 주의 의무는 주의 의무 이행의 필요성, 주의 의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그 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그 범위 역시 법원의 판례에 의해 확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2007.4.27.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강제동원 책임기업에게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일본의 사법부를 통해 밝혀진 상황이고 그 적극적인 이행이 일본 사법부에 의해서조차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공개 이후 밝힌 바와 같이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과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된 것이 아니어서 결국 한일 양국에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같은 책임 기업의 책임 이행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의 역할은 현재 한일간에 막중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피고가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그 규범적 의무를 다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법치주의를 확산하고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절호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피고의 명예가 더 높이 고양될 것입니다.

(3) 현재 피고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후 상호보유지분의 확장을 거듭 꾀하는 등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피고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일본 동경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협조하여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으나,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정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들로 하여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피고는 2008.5.21. 기업전문 조사 평가기관인 P&P리서치그룹조사에서 선정된 사회 기여도 1위 기업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귀 원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하며

본건은 주로 원고들이 청구권 자금을 대표적으로 사용한 피고에 대

해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아니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이자 일제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는 피고가 한일청구권협정 공개 이후 한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 노력과 일본의 최근 변화된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 헌법 질서상 어떤 배려 및 협조의무

구 석 명 신 청 서

사　　건 : 2007나87872호(2007나87889호병합)　　위자료청구

원　　고 : 여　운　택 외 150

피　　고 :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석명을 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및 전략적 제휴의 내용

(1) 현재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와 위 회사 전체 주식 대비 피고의 보유 비율은 어떠한지,

(2) 피고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제휴의 내용은 무엇인지,

(3)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는 부사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하고, 그 아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검토회를 두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4) 2008. 9. 2. 포스코 포항 공장에서 환원철의 공급과 건식 다스트리사이클에 관한 합병공장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지,

2. 피고의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참석과 관련하여,

(1)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2)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그 동안 피고측에서 참석을 한 바 있는지,

(3) 만약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과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4) 2008. 2. 과거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홋카이도 무로랑제철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정영득, 이정기, 구연석등)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한 역할 및 위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가 한 역할은 무엇인지,

3.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의 공동 사회 공헌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1) 피고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2008. 4. 9. 도쿄에서 신일본제출주식회사와 장애인을 위한 자선공연을 공동개최하였다는데 그 행사의 이름은 무엇인지,

(2) 위 행사는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진행이 된 것인지,

(3) 위 행사에 든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경비는 각 얼마인지,

(4) 위 행사를 계기로 피고와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진,

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고등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Ref. NO. 001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사 건 **2007 나 87872, 87889(병합)** 위자료 등

원 고 여 운 택 외 **150**명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2008. 11. 18.자 석명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및 전략적 제휴의 내용

(1) 현재 신일본제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와 위 회사 전체 주식 대비 피고의 보유비율은 어떠한지

총 238,352,000주이고 이는 총 주식 대비 3.5%입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2)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제휴의 내용은 무엇인지

2000.8.2일 전략적 제휴를 체결,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와 신일본제철은 철강 및 타 분야 조업의 원가절감과 R&D강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제3국에서 수행되는 철강 합작사업 및 이외 국가에서의 여타 사업(이러한 협력은 적용 가능한 반독점법에 비추어 허용되는 한도로 국한함)과 관련하여 양자 간 협력 증진을 하기로 하고, 주식을 상호보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기술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고로대수리시 등 완제품 및 반제품 상호 공급, 설비정비 관련 기술교류, 제3국에서의 합작사업, 원료 구매(Cokes 및 tar포함), 기자재 공동 구매, 수송 분야 등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피고와 신일본제철은 부사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검토회를 두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위와 같은 양사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 현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두고, 그 밑에 기술교류 및 원료구매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특별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및 기타 경영일반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08. 9. 2. 포스코 포항 공장에서 환원철의 공급과 건식 다스트리사이클에 관한 합병공장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지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피고와 신일본제철이 공동 투자한 부산물 재활용 법인인 PNR(POSCO-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은 2008. 8. 29. 포항제철소에서 포항 RHF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 피고의 신일본제철 주주총회 참석과 관련하여,

(1)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매년 6월 25일과 26일에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2)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 대해 그 동안 피고측에서 참석을 한 바 있는지,

매년 주주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3) 만약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신일본제철의 과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4) 2008. 2. 과거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홋카이도 무로랑제철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정영득, 이정기, 구연석 등)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일본제철이 한 역할 및 위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가 한 역할은 무엇인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3. 피고와 신일본제철의 공동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1)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2008. 4. 9. 도쿄에서 신일본제철과 장애인을 위한 자선공연을 공동 개최하였다는데 그 행사의 이름은 무엇인지,

전략적 제휴 차원 및 기업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양사에서 음악회를 교환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가 후원하여 2008. 4.경 한국 및 일본의 장애우 음악가들이 도쿄 신일본제철 키오이홀에서 뷰티플 프렌즈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였으며, 2009. 1.에 신일본제철이 비슷한 성격의 음악회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2) 위 행사는 피고와 신일본제철의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진행이 된 것인지,

전략적 제휴 차원 및 기업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내부 실무부서에서 기획하여 내부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3) 위 행사에 든 피고와 신일본제철의 경비는 각 얼마인지,

광고홍보비로 약 138,80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 위 행사를 계기로 피고와 신일본제철가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위에서 언급된 음악회 이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계획은 없습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2008. 1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 섭

담당변호사 이 상 민

담당변호사 장 영 기

담당변호사 오 정 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9부 귀중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